

2023학년도

한세대학교

계약학과 편입 모집요강



1. 계약학과 설치 법령 및 목적

-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여 운영이 되는 학과 형태**

2. 산업체의 범위 및 산업체 학생 입학 자격(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대상 산업체 범위	산업체 학생 입학 요건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산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5. 위호에 해당되더라도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6.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 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 (직선거리 기준)	1.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장이 입학을 수락한 자 2. 산업체에서 계약학과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 3.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 (2023. 3. 1. 입학 기준 / 2022. 5. 1. 이전 입사자) 4.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수업연한 2년)보다 장기여야 함 5.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자 6.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는 대표자(기업에 고용된 전문경영인) 7.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대표자는 불가

산업체 추천 대상자 입학 자격

1.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취득 및 수료 예정자(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원격(사이버)대학 등 포함)
※ 수료 : 출신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및 성적 취득을 의미하며, 수료 여부를 출신 대학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함. 입학 전후 최종 학력 조회 결과, 미수료자로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3년제의 경우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에서 2학년까지만 수료한 경우 지원 불가함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3년 2월 취득예정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80학점 이상 취득자(해당자는 80학점 이상 취득 증명 가능한 학점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3년 2월 취득예정자

3. 설치 학과

계열	학과명	학위 과정	계약 형태	정원	학위 종별	이수 학기
공학계열	IT융합지능로봇공학과	학사 (편입)	재교육형	20	공학사	4학기

■ 15명 미만 지원 시 계약해지

최종 등록인원 15명 미만 시 입학취소(전형료를 제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환불)

4. 전형 및 배점

입학유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
재교육형	50%	50%	100%

◎ 합격자 선발 방법

- ◆ 면접 및 서류전형에 의해 선발하며 본교 합격자 사정원칙에 따름
-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하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본교와 산업체간의 협약에 의하여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학에서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개설 교육과정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관련page	
산 업 체	① 계약학과 설치 요청서		본교소정양식	11	
	② 계약학과 사전 조사자료		본교소정양식	12	
	③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본교소정양식	13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2부)		본교소정양식 • 2부 작성 출력 후 • 업체 직인 날인	14, 19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점만 접수 가능 (지점은 계약 불가)		
	⑥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국민건강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가입인원이 반드시 표시되도록 발급) http://minwon.nhis.or.kr		
개 인	① 근로계약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무기 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2년)보다 장기여야 함		
	② 재직증명서		원본		
	③ 4대 보험 가입증명서(지원자 본인)		•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 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http://minwon.nhis.or.kr 직장가입자 전체 이력이 표시 되도록 발급		
	⑤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22년 입사자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산업체 또는 대표자 날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17	
	대학교 (4년제)	⑦ 수료(예정)증명서 ※ 2학년(4학기)이상 수료 기재 ⑧ 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전문대 (2,3년제)	⑦ 졸업(예정)증명서 ⑧ 성적증명서			
	학점은행 제/독학사	⑦ (학사/전문학사) 학위 수여 (예정)증명서 ⑧ 성적증명서		• 원서접수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 학점은행제/독학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발급	
		학사학위 과정자 중 80학점 이상 취득자	⑦ 학점인정증명서 ⑧ 성적증명서		
비 고	관련양식은 본 안내서 첨부 및 본교 홈페이지 [계약학과]에서 Download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개인 서류 중 ③④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6. 전형 관련

■ 편입학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유 의 사 항
산업체 계약 및 서류접수	2023. 01. 11.(수) ~ 2023. 01. 17.(화) 15:00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 및 직접방문을 통한 계약 체결 (우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디자인관 3층 301A호 산학협력단
원서접수	2023. 01. 18.(수) ~ 2023. 01. 20.(금) 18:00까지	대학 계약학과 입학지원시스템 Edge(엣지), 크롬(Chrome), 웨일(Whale)로 접속	산업체 계약 및 서류제출 완료 확인자만 원서 지원 가능 http://ims.hansei.ac.kr/platform/installNew.jsp?AppId=URSM_ONLY&SysId=CMZ&ProgId=cm_cma_apln::CMAAplnEschSprtLoginUG
전형일자	2023. 01. 28.(토)	디자인관 3층 고사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료 미납자 면접 참여 불가
합격자발표	2023. 02. 07.(화)	대학 계약학과 입학지원시스템	개별공지하지 않음
등록기간	2023. 02. 08.(수) ~ 2023. 02. 10.(금) 15:00까지		• 등록금 고지서 수령 후 산업체 · 본인 부담금 별도로 각각의 가상계좌로 납부 • 산업체 부담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납부하여야 함
산업체 부담금 납부확인서류 제출기간	FAX로 제출 2023. 02. 10.(금) 16:00까지	산학협력단 FAX 031-450-9838	• 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및 통장사본을 팩스 전송 • 미제출시 입학취소

■ 전형료 : 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678537-01-005467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금 시 '이름-휴대폰번호 마지막 4자리'로 입금 요망
- 접수가 완료된 이후(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 납부한 이후 천재지변, 입원 또는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형료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 전형료 미납자는 전형절차를 취소하고, 입학을 불허 함

7. 전형료 반환

■ 전형료 반환 기준

전형료 반환 기준	반환 금액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파일 업로드하는 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전형료 반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천재지변 혹은 질병(입원)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반환

관련 법령	반환일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2023년 4월 30일까지

■ 전형료 반환 방법

관련 법령	반환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또는 학교 직접 방문 중 택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 후 반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6항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8. 합격자발표 및 등록 안내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명단은 입학지원시스템 접속 후 확인
-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산업체 납부금 고지서는 반드시 산업체에 고지하여야 하며, 산업체 부담금 및 개인 부담금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취소 됨

■ 등록안내

1. 등록금은 산업체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을 각각의 지정 가상계좌에 입금(납부)
2. 산업체 부담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확인증을 기한 내에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함(2023.02.10.(금) 16시까지)
3. **산업체 부담금 이체확인증 미제출시** 입학취소하고 전형료를 제외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환불함
 - 팩스(031-450-9838) / 방문제출(디자인관 3층 301A호) 가능
4.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증빙 서류만 인정함
 - 이체증빙 예시
 - 출금된 내역이 포함된 통장면의 사본(상단에 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체확인증(출금계좌 명시되어야 함)
 - **무통장입금증은 인정되지 않음**
 - 산업체 부담금 이체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 부담금은 해당되지 않음

9. 산업체 추천 지원자 유의사항 (재교육형)

■ 재학 중 학적유지 관련 유의사항

1. 계약학과 입학 후 산업체에서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됨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제2항)
2.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 계속되는 휴업(휴직) · 사업장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등록금 등)는 **학생이 전액 부담**
3. 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전체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개인 부담으로 학적 유지
 - 전체 졸업학점의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할 경우 학적 유지

4. 학적이 유지되는 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퇴직사유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재직조사관련 유의사항

1.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 추천서와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 확인
2. 입학 후 재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월 시행하는 재직조사에 반드시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됨
 - 매년 1학기 개시 전월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가입인원 표시, 회사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매년 2학기 개시 전월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가입인원 표시, 회사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이미 접수된 원서 및 서류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원서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함

10.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합격을 취소함
2.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3. 기타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11. 관련문의

전공	연락처	담당자
IT융합지능로봇공학	031-450-5146	교수 이왕헌
산학협력팀	031-450-5303	팀장 이승희
교무학사팀	031-450-5139	파트장 차정현

12. 산업체 지원제도 안내(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1.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고용보험 환급제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은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이나,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산업학사·학사과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됨
3.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및 지사)에 훈련인정신청 및 실시신고
4.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계약학과 설치 요청서

1. 계약학과의 명칭

2. 과정명(학위명)

3.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조, 제2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교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기관 대표 (직인)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 1부. 끝.

한세대학교 총장 귀하

계약학과 사전 조사 자료

항 목	내 용
계약학과 개설 희망분야 및 교과목	※ 개설을 희망하는 분야(특별교육과정)를 기재
계약학과 개설 희망 시기	※ 0000년, 1학기, 2학기 기재
계약학과 설치 장소	※ 대학교내 강의실, 사업장 내 개설 선택
수업(강의) 방법	※ 주간, 야간, 주야간 혼합 형태 선택
수업(강의) 요일	※ 주 중 ()요일, 주말과정 등
1인당 지원 가능한 교육비 한도액	※ 사업주 교육비 예산

계약학과 위탁교육 추천 및 의뢰서

1. 지원자 인적사항					
지원학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지원자 근무사항					
근무부서		직위·직급			
재직기간	(년 개월)	담당업무			
3. 산업체 주요사항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주소					
홈페이지		회사규모(직원 수)			
4. 산업체 담당자(산업체 등록금 납부 등의 업무담당자)					
근무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Tel		HP		
	fax		e-mail		
5. 추천사유					
상기 직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의거 귀 대학이 실시하는 『계약학과에 의한 학사과정 위탁교육』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직원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및 교육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_____ 대표자명 _____ (직인) 한세대학교 총장 귀하					

- 1) 재직기간은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회사규모는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업무담당자는 계약학과 서류제출 및 등록금 납부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지원자 본인 불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재교육형)

한세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와 (산업체명) (이하 “산업체” 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한세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IT융합지능로봇공학과	야간	학사(편입)	공학사	20	2023.3.1.~2025.2.28.(2년)	교내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 ① 재교육형 : 입학대상은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할 허가 한다.
- ② 채용조건형 : 입학대상은 “산업체”에서 요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채용 및 의무근무를 약정한 경우의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할 허가 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나 의뢰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은 전체수업의 50%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50%는 현장실습, 원격수업 등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한세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학사관리) ①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 ② 계약학과는 일반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군 입대를 위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 ③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 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반드시 산업체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입학금 포함)의 50%이상을 부담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

2. 학생 분담비율 : %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산업체명의로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되며, 학생은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된다.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졸업이수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채용조건형의 경우는 채용약정서의 내용에 의거한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한세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단, 재학 중인 동일한 계약학과와 계약된 산업체로 이직한 경우 학생의 등록금 중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이직한 업체의 각서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학생이 100%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④ 채용조건형의 경우 산업체의 사유로 인해 학생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 동일한 업계의 산업체에서 채용을 약정하고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각서가 있는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내 학위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세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한세대학교

업 체 명 :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주 소 :

총장 직무대리 김 정 일 (직인)

대표자 (직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세대학교는 계약학과 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한세대학교 계약학과 운용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교의 학적부 생성, 학생증 발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입학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제2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지원사항(전형구분, 모집단위, 지원학과), 지원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추가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 학교 정보(최종학력, 재학/출신 학교명, 졸업(예정)연도, 대표번호)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계약학과 입학에 관한 자료는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단, 학적기록은 영구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계약학과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

으시는 경우 본 계약학과 계약 체결,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계약학과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0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계약학과 계약 및 입학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양식4]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2부 작성(날인)하여 제출**

1. 산업체명 입력(기재)

한세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산업체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3. 제8조 제②항 : 산업체 분담비율, 학생 분담비율 입력(산업체가 50% 이상)

5. 마지막 장

- 날짜 기재하지 마세요
-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입력 후 직인 날인